

『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경상북도에서는 '93년부터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지역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용자 지원하고 있으나, 농촌 고령화의 가속화와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농어업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재원 확보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농어촌진흥기금을 확대 조성하기로 협의함.
- 이에 출연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1년 본예산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자·출연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출연 개요

- (1) 기 금 명 : 2021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
- (2) 주관기관 : 경상북도
- (3) 조성근거 :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
- (4) 출연금액 : 금228,000천원

(5) 조성목표 : ('93~'17년)2,000억원 → ('22년까지)2,500억원 이상

(6) 조성기간 : 2018년 ~ 2022년(5년간 연장)

(7) 재 원 : 도, 시·군, 농·수협 등의 출연금 및 이자

※ 출연근거 : 기관별 출연액 협의결과('17.7.14, 시·군 농정과장 회의)

나. 사업개요

(1) 사업대상

- 도내 주소지를 두고 농수산업을 영위하는 농어업인, 농어업인 단체, 농어업 법인, 농어업 관련 기업체 또는 농·축·수협, 특수조합 등

(2) 지원사업

-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
- 지역특화작목 및 소득작목 육성지원
- 농어업시설의 구조개선 및 첨단산업화 지원
- 신기술개발 및 고부가 농수산식품산업 육성지원
- 농수산물 수출육성 지원사업
- 농수산물 생산·가공·유통 및 농촌융복합산업 지원
- 로컬푸드 활성화 및 산지조직화 지원
-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
-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고령·여성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
- 농수산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 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
- 도내 농수산물 판로 확대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농수산식품산업 관련 투자유치기업 지원 사업

(3) 지원기준 및 조건

- 지원한도액
 - 개인 : 2억원 이하, 법인 : 5억원 이하
 - 기타(가공산업육성 및 기업투자유치 등) : 10억원 이하
- 지원형태 : 융자지원 100%
 - 운영자금 : 연리 1.0%,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
 - 시설자금 : 연리 1.0%,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

(4) 사업추진절차

- '20. 9월 : 사업지원계획 시달(도)
- '20. 10~11월 : 사업대상자 모집 및 사업신청(시)
- '20. 12월 : 사업대상자 선정 및 승인(도)
- '21. 1~12월 : 사업추진 및 사업완료확인 신청(사업자⇒시)
- '21. 1~12월 : 사업완료확인서 발급(시)
- '21. 1~12월 : 융자실행(금융기관)

다. 출연현황 및 지원실적

(1) 구미시 출연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기관별	'93~'19년 출연실적	'20년 출연액	'21년 출연계획	비고
구미시	5,796	228	228	

(2) 경상북도 출연현황 및 조성목표액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	계	'19년까지	'20년	'21년
재원별	계	244,789	226,789	9,000	9,000
	도	58,392	53,392	2,500	2,500
	시·군	103,200	94,200	4,500	4,500
	금융기관	21,815	19,815	1,000	1,000
	운영수익	61,382	59,382	1,000	1,000

(3) 연도별 지원실적(구미)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계	'96-'12	'13	'13	'15	'16	'17	'18	'19	'20
농가수(호)	262	156	29	9	7	12	17	13	11	8
융자금액	27,052	14,588	1,651	1,390	795	1,980	2,014	2,124	1,720	790

라. 출연의 필요성

- (1) FTA 확대 등 지속적인 시장개방에 따른 지역 농수산업의 충격완화와 농업자생력 및 변화하는 환경 대응력 강화를 위해 '93년부터 조성 운영 중인 농어촌진흥기금을 확대 조성하여 운영
- (2) 기관별 출연액 협의결과('17. 7. 14, 시군 농정과장 회의) 근거하여 지역의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기금 출연 필요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, 「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3조
- 예산조치 : 2021년도 예산편성
-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「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」은,

- FTA 확대 등 지속적인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'93년부터 운영 중인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에 기관별 출연액 협의결과('17.7.14, 시·군 농정과장 회의)에 따른 출연으로, 농촌 고령화의 가속화와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농어업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출된 동의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